

## 충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1차 개정 2016.10.05.

2차 개정 2019. 3.19.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무역학과(이하 “학과” 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① 4개의 별도 지정 과목(연구조사방법1,2/국제무역연구1,2)을 수강하여야 한다.(2012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 ② 3개의 별도 지정 과목(연구조사방법1,2, 국제무역연구)을 수강하여야 한다.(2012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자 적용)
- ③ 박사학위과정 중 동일한 석사학위과정에서 기 수강한 경우 제 1,2항 기준을 예외로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 ① 석사학위과정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응시과목은 지도교수가 지정한다.
-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 ③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면서 지난 학기에 이미 합격한 과목을 선택할 경우 해당 과목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PBT 490점, CBT 163점, IBT 57점) 이상
  3. TEPS 476점 이상(NEW TEPS 255점 이상)
  4. TOEIC Speaking 80 이상
  5. OPIc IM1 이상
  6. IELTS 6 이상
  7. 언어교육원의 모의TOEIC 600점 이상
  8.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 ② 제1항 제8호에 의한 본교 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영어회화,토익,토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 (P/F 형식)
  2. 제2외국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 ⑤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05. 2019.3.19.)

#### 제6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④ 예비 발표는 학과주임교수 주관으로 석사학위과정 1회, 박사학위과정은

2회 실시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① 박사학위과정은 전문학술지 2편 이상을 게재한다.
  - 1. 주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 등 모두 인정한다.
  -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은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예외)** 대학원 무역학과 FTA비즈니스 전공에 대해서는 제3조(논문제출 자격) ~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소급적용하되, 2013학년도 전기 이전 입학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6.10.05.)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개정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3.19.)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